

### 교원양성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38
제정일자	2010.12.3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2010.12.31.제정 2014.02.01.개정 2016.01.01.개정 2020.09.25.개정 2021.12.22.개정 2022.04.15.개정 소판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의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원양성과 관련하여 교육과 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1.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개발 편성 및 운영
- 2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한 검정
- 3. 교육실습,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- 4.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의 결정
- 5. 기타 교원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외부위원 1명, 관련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1명을 포함하여 위촉한다. <개정 2020.09.25.,2021.12.22.>
  - ③ 위원회의 운영지원과 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- 제4조(임기)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.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**제6조(회의 및 의결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기타)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

### 교원양성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38
제정일자	2010.12.3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2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용) 이 규정에 전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, 본교 학칙 및 제 규정에 의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.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2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